

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(안)

의안 번호	1 6 7
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1998. 4. 20.

발 의 자 : 박정자 의원의 8인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우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민과 우리구 의회 의사를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영등포구청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.

2. 주요골자

가. 구정질문 및 답변

- 기 간 : '98. 5. 4.(월)
- 장 소 :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
- 출석대상 : 부구청장, 기획실장, 총무국장, 재무국장, 시민생활국장, 도시정비국장, 건설국장, 보건소장

3. 관련법규

가. 지방자치법 제37조

나.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범위에관한조례 제2조

다.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